제5축: 개인, 회사, 펀드의 과세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과세는 두 허브가 방법에서는 가장 크게 다르지만, 전형적인 보유자에게 결과는 가장 적게 다른 축입니다. 스위스는 세 단계에서 재산과 소득에 과세하지만, 연방직접세법(DFTA, 독일어 DBG)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의 사적 자본이득은 비과세합니다. 토큰을 사고파는 개인은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연말 가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채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회람 제36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이 영업적 거래자로 판정되면 비과세 혜택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이익은 자영업 소득으로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대상이 됩니다.[1]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으므로, 194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s. 10(1)(a)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사업소득 여부는 영업의 징표(badges of trade)로 판단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은 사업 과정에서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경우 소득이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2]

회사의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위스 회사는 실현된 모든 이익에 대해 이익세를 내며, 실효세율은 추크가 약 12%, 취리히가 약 19–20%입니다.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세를 냅니다. 토큰 발행 대금은 토큰이 약속하는 내용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가 되며, 재단 트레저리는 목적이 공익적이거나 자선적이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FTA 제56조 g호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사업이익에 대해 부분 면제를 적용한 17%의 세금을 내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Section 10L은 경제적 실질이 없는 다국적 그룹 소속 실체가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자산 처분이익에 과세합니다.[3] 펀드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Section 13O 및 Section 13U 인센티브가 지정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을 면제하며,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디지털 토큰도 지정 투자자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스위스는 펀드를 투자자 단계에서 투시과세하며, L-QIF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개인의 사적 자본이득	영업적 거래자가 아니면 비과세(DFTA 제16조 제3항)	자본이득세 없음. 사업소득은 과세(ITA s. 10(1)(a))
재산세	있음, 칸톤(주) 세. 연말 연방세무청(FTA) 시세표	없음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개인)	소득(DFTA 제16조 제1항, 제20조)	사업 또는 서비스인 경우에만 소득
회사 이익	연방 및 칸톤 이익세. 추크 실효세율 약 12%	부분 면제를 적용한 17%. 해외자산 이익에는 s. 10L
재단 트레저리	DFTA 제56조 g호 요건 충족 시 면세	보증유한회사(CLG)는 자선단체 지위가 없으면 과세
펀드	투시과세. L-QIF	s. 13O/13U 면제. 가변자본회사(VCC)
토큰 교환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면세(지급수단)	2020년 1월 1일부터 GST 면세 공급
정액과세 또는 속지주의 혜택	지출 기준 과세, DFTA 제14조(추크 가능, 취리히 불가)	속지주의. 해외원천소득은 송금하지 않으면 면세(s. 10L 적용 유보)
투명성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CRS. CARF 시행(제G편 제VII장 참조)	CRS. CARF 도입 약속(제M편 제VII장 참조)

국경 간 관점

베스팅된 프로토콜 토큰 2,000만 스위스프랑어치를 가진 창업자가 추크와 싱가포르 중 어디에서 현금화할지 묻습니다. 추크에서는 창업자가 사적 투자자라면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토큰에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트레저리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때마다 영업적 거래자로 판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토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이익은 비과세이고 재산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업자는 영업의 징표 분석을 통과해야 하며, 그룹 실체를 통해 보유한다면 s. 10L의 실질 요건도 통과해야 합니다. 제P편 제I장의 계산을 보면 대개 두 결과가 표면세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은 창업자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

1. DFTA (SR 642.11) 제16조 제3항 및 제18조; 스위스 연방세무청, 2012년 7월 27일 Circular No. 36 “Gewerbsmässiger Wertschriftenhandel”; 연방세무청 실무 문서 “Kryptowährungen und Initial Coin/Token Offerings als Gegenstand der Vermögens-, Einkommens- und Gewinnsteuer, der Verrechnungssteuer und der Stempelabgaben”, 최신판. 제G편 제I장 및 제II장 참조. ↩

2. Income Tax Act 1947, s. 10(1);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 2020년 4월 17일 최초 발간 후 개정. 제M편 제I장 및 제II장 참조. ↩

3. DFTA 제56조 g호 및 제58조 이하; Income Tax Act 1947, ss. 10L 및 43; IRAS e-Tax Guide “Tax Treatment of Gains or Losses from the Sale of Foreign Assets”(2023, 개정 포함). 제G편 제IV장 및 제M편 제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